KOSHA GUIDE

C - 109 - 2017

- (9) 아세틸렌, 산소가스 용기는 가연성·인화성 물질 및 용접·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, 스파크, 슬래그로부터 안전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보호조치하고 전도 방지조치를 하여 저장·취급하여야 한다.
- (10) 산소를 공급하는 배관은 표면에 이물질이나 기름 성분 등이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위험이 없도록 이물질이나 기름 성분 등을 제거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11)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 확인, 비상연락, 응급조치 등 행동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6.2 밀폐공간 작업

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, 화재·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
- (1)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출입자의 작업내용, 유해·위험 요소,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, 감시인은 작업 전 위험 요인에 대해 점검하여 사전 조치하고, 작업 중에는 근로자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(3) 근로자가 화학설비 또는 화학설비가 있는 밀폐공간에 출입하여 청소, 검사, 보수 및 시험 등을 할 경우 다른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와 연결된 부분에는 맹판 설치, 배관 분리 등을 통해 화학물질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유해가스 등으로 질식 또는 중독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5) 파이프 등의 공급라인, 저장탱크 용기 등에 존재하는 물질(스팀, 액화가스 등)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단 후 잠금장치(Lock-Out)와 꼬리표(Tag-Out)를 부착하여야 한다.